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3922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392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443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1. 5.

판결선고 2021. 12.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443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